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16호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임실군의회 의장인



1. 제정이유

임실군에 거주하는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성 질병자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신청 방식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라. 지원의 중단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마.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성 질병자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질병을 말한다.
3. “조호물품”이란 질병 노인들을 돌보는 물품으로서 노인의 신체 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복지용구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3. 노인성질병자(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제외)

제4조(지원기준)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과 조호물품 수요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신청) ①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담당 공무원 등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조호물품을 지원 받는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호물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조호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제3조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